

부속서 10-나

포도주,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

제 1 부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,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  
(제 10.18 조제 1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)

증류주<sup>1</sup>

보호되는 명칭	한글로의 음역
Scotch Whisky	스카치 위스키
Irish Whiskey / Irish Whisky <sup>2</sup>	아이리쉬 위스키 (양주의 일종)

<sup>1</sup> 지리적 표시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경우: "Irish Whiskey / Irish Whisky", 이것은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.

<sup>2</sup> Irish whiskey / Irish whisky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.20조에 따른 명세서에 부합하는 증류주를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. 이 협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, Irish whiskey / Irish whisky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, Irish whiskey / Irish whisky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된 제10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날부터 적용된다. 대한민국은 자국의 법정 절차에 합치하게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.

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,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  
(제 10.18 조제 2 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)

증류주

보호되는 명칭	로마자로의 음역
진도홍주(Jindo Hongju)	Jindo Hongju